

중국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의 국제 교류·협력 활동 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

< 2023.05.04. 한·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>

□ 배경/목적

- 중국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(FIO)는 국제협력업무 관련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 하기 위해 《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 국제협력 및 교류 관리규정》 수립 및 반포(22.10.09)
 - 적용 범위는 FIO 내 모든 직원 및 관계부서(한중센터 포함)로 하며, 국제협력에 관한 모든 업무는 FIO 국제협력처에서 전담

□ 주요내용

가. 국외 인사의 FIO 방문 관련

- 사전 방문 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
 - (차년도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/심사) FIO 관계부서는 당해연도 연말에 차년도 국제 협력·교류 및 초청 계획을 국제협력처에 보고, 국제협력처에서 관련 계획을 취합 및 심사, 이후 FIO 임원의 승인을 거쳐 자연자원부에 보고 및 승인 득 必

▶ 한국 측 기관(혹은 관계자)이 차년도에 FIO(한중센터 포함)를 방문 혹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, 한중센터 혹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제출 후, 관련 절차에 따라 자연자원부 사전 승인 득 必

- (실제 방문 실시에 대한 신청/승인) 자연자원부 승인을 득한 차년도 국제 협력·교류 계획 관련, FIO 관계부서는 실제 방문·교류가 추진되기 40일(업무일 기준) 이전, 국제협력처에 <자연자원부제 1해양연구소 대외업무 신청표>를 제출하고, 국제협력처 심사 및 FIO 임원의 승인을 거쳐 자연자원부 보고/승인 후 실시

▶ 자연자원부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(1회성이 아닌, 다수 교류 포함)라 하더라도, 실제 교류 활동 진행 시, 매회 관련 절차 추진 必

▶ 대외업무 신청표는 FIO 관계부서(한중센터 포함)에서 제출하나, 상기에 언급된 업무일 기준 40일은 중국 내 수속절차와 관련한 최소 시한이므로, 한국 측에서는 최소 50일 전 정확한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 및 부가서류(방문자 이력서, 방문일정·목적 등) 준비/제출 必

- (초청장 발급) 교류·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피초청자(기관)가 초청장 발급이 필요한 경우, 상기 절차에 따라 자연자원부 승인을 득한 후, 초청을 담당하는 FIO 관계부서에서 초청장 발급
 - * 단, FIO 가 아닌, 자연자원부 명의의 초청장이 필요할 경우, FIO 관계부서에서 국제협력처에 '대외업무 신청표' 제출 시, <초청장 신청 전문가 정보>를 일괄 제출하고, 자연자원부 승인 후 발급
- 사전 방문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
 - (FIO 내부 심사 후 관련 절차 추진) 이전 연도에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못한 교류 활동은 국제협력처에서 FIO 임원의 동의를 득한 후 관련 절차(자연자원부 보고/승인) 진행 후 실시
 - (기타 상황) 타 기관 방문을 주 목적으로 하나, 임시로 FIO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, 혹은 중요하거나 민감한 단체가 FIO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FIO 내 관계부서를 통해 국제협력처에 사전 보고 후, FIO 담당 임원 혹은 자연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 실시

▶ 한국 측 관계자가 중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후, FIO(한중센터 포함)를 단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중센터 혹은 해당 관계부서 등을 통해 FIO 국제협력처 사전 보고 및 관련 절차 진행 必

나. 국제회의(학술행사 등) 개최 관련

- 사전 회의 개최 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
 - (차년도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/심사) FIO 관계부서는 당해연도 연말에 차년도 국제회의 개최((공동)주최/주관 포함) 계획을 국제협력처에 보고, 국제협력처에서 관련 계획 취합 및 심사, 이후 FIO 임원 승인을 거쳐 자연자원부에 보고 및 승인 득 必

▶ 한국 측 기관(혹은 관계자)이 차년도에 FIO(한중센터 포함)와의 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, 한중센터 혹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제출 후, 관련 절차에 따라 자연자원부 사전 승인 득 必

- (실제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신청/승인) 자연자원부 승인을 득한 차년도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, FIO 관계부서는 국제협력처에 <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 국제회의 개최 신청표>를 사전에 제출*하고, 국제협력처 심사 및 FIO 임원의 승인을 거쳐 자연자원부 보고/승인 후 실시

* <신청표> 제출 기간은 회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, 100인 이하는 최소 2개월 전, 100인 이상~300인 이하는 최소 3개월 전, 300인 이상은 최소 1년 전에 관련 신청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

▶ 자연자원부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라 하더라도, 실제 회의 개최 시, 관련 절차 추진 必
 ▶ 회의 개최 신청표는 FIO 관계부서(한중센터 포함)에서 제출하니, 상기에 언급된 규모별 제출 기한은 중국 내 수속절차와 관련한 최소 시한이므로, 한국 측에서는 제출 기한 보다 최소 1개월 앞선 시점에 정확한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 및 부가정보(참석자 명단, 이력 등)의 준비/제출 必

- (초청장 발급) FIO가 (공동)주최/(공동)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대기관의 관계자가 초청장 발급이 필요한 경우, 상기 절차에 의거 회의 개최에 대한 자연자원부 승인을 득한 후, 회의 추진을 담당하는 FIO 관계부서에서 초청장 발급

* 단, FIO 가 아닌, 자연자원부 명의의 초청장이 필요할 경우, FIO 관계부서에서 국제협력처에 '국제회의 개최 신청표' 제출 시, <초청장 신청 전문가 정보>를 일괄 제출 하고, 자연자원부 승인 후 발급

○ 사전 회의 개최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

- (원칙적 추진 불가) 전년도에 제출한 계획 가운데 자연자원부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거나, 계획 자체가 반영되지 못했던 모든 회의는 회의 개최에 대한 재신청 혹은 임의 개최 등 원칙적 不可

- (타 기관 요청에 의한 공동주관/후원 참여) 단, 국내외 여타 기관이 FIO를 공동주관/후원자격으로 하여 회의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, FIO 내부 심의(국제협력처, FIO 임원)를 거쳐, 관련 절차(자연자원부 보고/승인) 진행 후 실시 가능

▶ 한국 측 기관(혹은 관계자)이 FIO(한중센터 포함)를 공동주관/후원 자격으로 참여를 요청하여 국제회의(학술행사)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, 상기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자연자원부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추진 가능